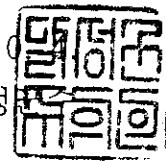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609

제출일자 : 2010

제 출 자 : 달성군



##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정이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시장의 특성별 구분과  
개설 운영 및 상인회의 설립·운영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상인회의 등록과 등록취소, 상인회와 공동사업 수행시에 필요한 절차, 적법한 사업 확인위한 결산·보고를 명시(안 제3조 ~ 제11조)
- 나.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경우 시설과 부지에 관한 기준,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관리와 책임에 대한 기준 명시(안 제12조 ~ 제19조)
- 다. 시장 영업권의 승계에 관한 규정 명시(안 제 20조)
- 라.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시설물의 소유권 기준 명시(안 제23조)
- 마. 시장의 위탁관리 근거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 명시(안 제24조, 25조)

## 4. 조례안 : 복임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조치 없음
- 다. 입법예고 : 2010. 03. 15 ~ 2010. 04. 05, 결과 : 의견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항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래시장”이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2. “인정시장”이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시장을 말한다.
3. “상인회”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 내에 있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군수에게 등록한 조직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시장 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 제2장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

제3조(상인회 등록)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회 기능)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20조 및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의 수행
2. 법 제25조, 법 제26조에 따른 시장경영현대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 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의 수행
3. 그 밖의 시행규칙 제12조제5항에 의한 정관에 포함된 사업내용

제5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다.

1.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상인회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 상인회가 스스로 조직을 해산한 경우

제6조(청문) 군수는 제5조제1호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사업 경비 지원) ① 군수는 상인회가 법 제26조에 따라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 시행은 군수가 직접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여 상인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보조사업 절차) ①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사업은 상인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며, 주차장·화장실 등의 공사와 같은 공공재산적 성격의 사업은 군수가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 상인회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보조 받고자 할 때에는 상인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인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하여 수정·권고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집행과 결산) ① 군수는 공동사업 및 보조사업비를 상인회가 직접 시행하도록 지원할 경우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검토·협의 후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상인회는 군수에게 사업집행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와 서류)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상인회 조직에 관한 서류(회원명부, 정관 등)
2. 관할구역(시장) 배치도
3. 사업수행에 관한 서류
4. 자체 사업계획서
5.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
6. 보조금 집행내역서 및 그 증빙서류
7.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8. 그 밖의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보고) 상인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상인회의 총회 개최 시 토의사항
2. 직접사업 수행 시 군수의 사업진행사항 요구 자료
3. 사업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현황 자료
4. 그 밖에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장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제12조(재래시장의 인정)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인정시장 구역의 범위) ① 군수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는 재래시장은 점포 수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접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제14조(인정시장의 시설과 부지) ①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6조(인정시장의 관리) ① 군수는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시장에 대하여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 질서의 확립
  2. 상인회 회원간의 의견 조정
  3. 청소, 화재예방,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등 시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 ③ 군수는 인정시장에 대하여 법에 의한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인정시장의 등록 취소) ① 군수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 ① 편의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인정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관리책임을 진다.
- ③ 군수는 상인회와 협약에 따라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등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와 책임) ① 시장관리자는 해당 시장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시장관리자는 방화관리책임자 또는 자율소방대를 두는 등 화재진압 및 소방도로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시장관리자는 상인 및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 시설 제거 등 시장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영업권의 승계) 군수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 시장안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완료된 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21조(경비의 부과) ① 상인회는 인정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 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자료 제출)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대하여 구역을 표시한 도면, 시장의 면적, 상인명단, 점포수, 편의시설 등에 관한 현황자료를 상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군수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23조(시설물의 소유권) ①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한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 당시 해당시장의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의 시장부지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시장건물·주차장·화장실·고객센터·물류시설·비 가리개 등 공동 시설을 말한다.)
  2. 인정시장의 구역 안과 밖에서 시장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
-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상인회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구역 안과 밖에서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다만, 사도가 아닌 도로와 공영 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독립된 토지안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2. 제1호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단서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는 군수와 협약으로 정한다.

제24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설현대화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상인회·시장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입점상인 및 시장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비용의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6조(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 ① 군수 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 받은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인정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의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 제2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 ② 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29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회 등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